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**2017년 4월 3일(월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2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7. 3. 31(금) | 담당부서 | 기술규제정책과, 세계무역기구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 및 담당자 |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정석진 과장, 이보하 연구사(043-870-5521)<br>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박성진 과장, 이상엽 주무관(044-203-5635) | | |


# 산업부,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

## - 사우디, 브라질 등 11개국 16건의 규제 완화 또는 철회 확인 -
## - 중국에 대해 불합리한 기술장벽 해소와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'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기술장벽(TBT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위원회 정례회의 계기에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 협의했다.

* 무역기술장벽(TBT;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: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

○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, 인도의 2차 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(STC)으로 공식 제기했다.

* 특정무역현안(STC: Specific Trade Concerns):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(WTO TBT)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

**[특정무역현안 안건]**
**중국** : ①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, ②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, ③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
**인도** : ④ 2차 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, ⑤ 과도한 가전제품 재활용의무화, ⑥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

○ 특정무역현안(STC) 6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해외 기술규제 안건에 대해서는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전개했다.

**[양자협의 안건]**
① **중국**(표준화법 등 10건, STC 의제 3건 포함), ② **사우디**(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등 6건), ③ **인도**(2차 전지 안전 등 4건), ④ **UAE**(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등 2건), ⑤ **이집트**(에너지효율 등 2건), ⑥ **싱가포르**(물소비 효율 등 2건), ⑦ **베트남**(전자제품 에너지효율 등 2건), ⑧ **태국**(타이어 품질인증 등 2건), ⑨ **EU**(에코디자인 규제 등 2건), ⑩ **브라질·대만·케냐·칠레·우크라이나** 각 1건

□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기간중 양자협의 결과, 사우디 등 11개국 16건의 규제는 철회 또는 완화를 확인하였고, 인도, 사우디 등 2개국의 4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의 개정 등 향후 긍정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.

○ 특히, 최근 중국의 각종 조치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,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별도 협의를 갖고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의 해소와 국제규범의 준수를 촉구했다.

- 협의 결과 중국측으로부터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하던 지방정부별 배기가스 규제 조기시행(중앙정부 '20.7월 시행)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.

- 기업 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표준화법의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, 향후 개정안 마련 시 우리 기업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.

- 한편, 산업부는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관광, 유통서비스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.

○ 아울러, 사우디, 아랍에미리트(UAE), 이집트 등의 전자제품, 식기세척기, 냉장고의 에너지효율 적용대상 및 판정기준을 명확화하고,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등 수출 확대 애로 요인을 개선하였다.

□ 이번 주요국과의 무역기술장벽(TBT) 협의 결과 규제개선 또는 유예로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기준완화에 따른 비용절감, 규제 대응시간 확보, 인증 시간 단축 등의 비관세장벽(기술규제) 해소로 수출확대와 시장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

○ 사우디는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데, 이 규제의 적용이 어려운 제품들의 제외를 요청하는 우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두께 0.25mm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하기로 하고 시행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.

○ 브라질의 텔레비전 안전·에너지효율 규제('17.4월 시행)는 대기전력 사후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(0.1~0.9W의 5%이내)하므로, 이를 최소에너지성능기준(1W의 5% 이내)으로 완화하기로 했다.

○ 이 외에도, 오는 4월부터 시행예정인 아랍에미리트(UAE)의 식기세척기 물 효율 규제와 이집트 에너지효율 규제는 우리 기업이 수출 준비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아랍에미리트(UAE)는 '17. 8월로, 이집트는 '18.4월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
① 4월중 관계부처, 업종별 단체, 개별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협의결과를 설명하고, 개선된 규제를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.

② 미해결 해외 규제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채널(한·중 적합성소위, 한·유럽연합(EU) 규제대화체 등)을 활용하여 협의하고, 민·관 합동 대표단이 규제 당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협의할 방침이다.

③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(WTO TBT) 위원회 회의가 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장(場)이라는 점을 감안, 제2차 위원회(6.13~15일)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과 협의하여 신규 기술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미해결 규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.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이보하 연구사(☎043-870-5521)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이상엽 주무관(☎044-203-56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 고 WTO TBT 위원회(`17.3월) 주요 협의내용 (14개국 37건)

### □ 규제 철회 또는 완화(16건)

| 국가 | 규제명 | 요구사항 (기업애로) | 협의결과 |
|---|---|---|---|
| 중국 | 표준화법 개정 |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**기업표준 공개 의무 조항 삭제 및 공개 수준 최소화 요청** | **(규정명확화) 기업표준의 비공개 처리**계획 및 표준화법 개정안의 **WTO 통보·의견 수렴** 약속 |
| | 배기가스 배출 규제 | **지방 정부의 규제(China6) 先시행 일정 문의** | **(시행유예)** 지방정부별 배기가스 규제 **선시행**(중앙정부 `20.7월 시행) **계획 철회** |
| 사우디 | 대용량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 | 제품 등록 소요시간, 사후관리 허용오차, 시행일 및 시행 기준 등 **정보 부족**으로 준비에 애로 | **(규정명확화)** 규제 관련 시행일('17.10월)확인 등 정보 제공 |
| |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규제 | 시행일 확인**(1년간 시행유예 여부)**<br><br>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적용이 어려운 **15개 제품**을 **규제대상에서 제외**해 줄 것을 **요청** | **(규제개선)** 두께 0.25mm 이상 제품에 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 및<br>시장에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 1년간 시행유예 부여(`17.4월 →`18.4월) |
| | 전자제품 및 자동차 에너지효율 규제 | 고효율 모델의 정의 및 기준과 관련하여 '16년 3차 회의시 **사우디가 제공한 정보사이트 접속이 불가능** | **(규정명확화)** 고효율 제품 판정 기준 및 정의 정보 제공 |
| | 타이어 에너지효율 규제 | GSO-SASO **통합 진행 현황 문의**<br><br>**비용지불 프로세스 개선** 요청(해외 납부 및 미화 허용)<br><br>**라벨 비용 청구서(인보이스) 통합 발행** 요청 | **(규제개선)** 라벨비용 청구서 통합 발행 개선 약속(2개월 내 인증발급 시스템에 반영) |
| UAE | 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라벨링 | 시행기준, 등급 결정 기준, 최저 허용기준 도입 여부 등 **일부 규정이 모호함**<br><br>**규제대응기간 부족** | **(규정명확화) 시행기준, 등급 결정 기준, 최저허용 기준 도입 등** 모호한 규정 명확화<br>**(시행유예)** '17.4월 → '17.8월 (1년유예) |
| 이집트 | 냉장고 에너지효율 | 규제시행일 **정보 제공 요청**<br>**공포 후 최소6개월 유예기간 제공 요청** | **(시행유예)** '17.4월 → '18.4월(1년 유예) |
| 싱가포르 | RoHS 규제 | DoC 양식 및 제출의 **구체적 절차**에 대한 빠른 **정보 제공 요청** | **(규정명확화) 관련 절차 가이드 제공 확보** |
| | 물효율 라벨 규제 | 신규 **등록시스템 및 등록절차 정보제공 요청**<br><br>**구라벨 교체 대상, 시기, 마감일 등 경과조치 정보 제공 요청** | **(규정명확화)** 신규 **등록시스템 개설 시점 및 등록절차 정보 제공 확보** |
| 베트남 |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인증 | **기인증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문의**<br><br>신규라벨 **도안 제공 요청** | **(시행유예)** 규제 개정 후에도, 유효기간이 남은 전자제품 에너지 라벨 사용허가 |

| 국가 | 규제명 | 요구사항 (기업애로) | 협의결과 |
|---|---|---|---|
| 태국 | 타이어 인증 | **유럽 인증 마크(E마크)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** | **(규제개선)** 우리기업이 기 취득한 유럽 E-mark 시험성적서를 인정 및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 허용 |
| 칠레 | 텔레비전 에너지효율 규제 | 제조자가 **최소 허용기준(0.5W) 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라벨에 표기**할 수 있도록 **제도 개선 요청** | **(규제개선)** 대기전력 표기기준이 1W 이내일 때 소수점 둘째 자리로 명기하여 합리화 |
| EU | 반도체 PFOA 사용 규제 |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기 설계된 **예비 부품에 대한 PFOA 사용의 예외 조항 포함 요청** | **(규제개선)** 예비부품에 대해 PFOA의 사용제한 철회 |
| 브라질 | TV 적합성평가절차 규제 | 대기모드 소비전력 사후관리 기준을 **EU, 요르단, 터키 등 다른나라와 같이 0.6W 수준으로 개정 요청** | **(규제개선)** 대기전력 사후관리 기준 완화 (측정값의 5%이내에서 최소에너지성능기준값(1W)의 5%이하) |
| 대만 | 절수라벨 규제 | 시험소 부족으로 인해 '17.7월까지 규제 준수가 어려우므로 **추가 3개월 시행 유예기간 요청**<br><br>절수라벨 **인증신청절차 개선 요청**(현행 매월 5일 접수 → 상시 접수) | **(규제개선)** 기업의 라벨을 상시 신청 가능하도록 접수제도 개선 (월 1회 → 상시 접수) |

## □ 긍정검토(4건)

| 국가 | 규제명 | 요구사항 (기업애로) | 협의결과 |
|---|---|---|---|
| 사우디 | 가전제품 에너지라벨링 규제 | 사후관리 시 기준값으로 사용되는 **라벨 표기값을 제조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** | **(긍정검토)** 라벨 표기기준 개선 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개정할 계획 |
| | 세탁기 물소비효율 규제 | 수동 급수 방식인 **트윈텁 세탁기** 물 소비량 **규제** 적용 불합리 → **적용 제외 요청**<br><br>시행일, 시행기준, 사후관리 허용오차 등 **정보 제공 요청** | **(긍정검토)** 라벨 표기기준 개선 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개정할 계획 |
| 인도 | 2차 전지 안전 규제 | 안전인증 사후관리 시 **10일 이내로 샘플 현지 송부 요구에 대한 기한준수의 어려움** | **(긍정검토)** 사후관리 시 샘플 제출 기간 연장(10일→20일) 및 전자파일 시험성적서 인정에 대해 긍정검토 회신 |
| | 배터리 및 배터리 적용제품 BIS 인증 규제 | 안전인증 시 셀시험과 팩시험을 순차적으로 별도 시행하여 **30주 이상의 과도한 인증 취득 기간 소요** | **(긍정검토)** 인증시간 단축(30주→24주)에 대한 긍정 검토 회신 |

## □ 지속 추진(17건)

| 국가 | 규제명 | 요구사항 (기업애로) | 협의결과 |
|---|---|---|---|
| 중국 | 신에너지 차량 제조자 및 제품의 진입 관리규정 | 엔진 생산기술 이전을 위한 최소 3년 이상의 **시행 유예 요청**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| | 화장품 라벨관리 방법 | 라벨에 표기된 **효능**을 제**3자**가 **검증**하도록 **의무화**하여, **비용 증가** 및 **기업비밀 유출**을 **우려**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| |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| **효능광고 근거자료**를 **홈페이지**에 **공개**하도록 **의무화**하여, **기업비밀 유출**을 **우려**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| | 의료기기 등록 관리방법 | **한국의 주소개편(도로명)**으로 의료기기 **생산지 주소 변경**이 필요하나 **허가항목으로 비용(약 1천만원) 및 2∼3개월 시간 소요**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| |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 | **WTO TBT 통보** 및 의견 수렴절차 진행 **요청**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| | 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| **의료기기 허가·등록** 시, 해외 기업에 **중국기업 대비 2배의 수수료 요구**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| |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| **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**으로 **비용 및 시간소요 부담**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| |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 등록 규제 | **기업별 3개 브랜드, 9개 제품**으로 **판매가능 제품수**를 **제한**하여 수출기업 피해 우려(우리나라는 **3개사에서 98개 제품을 수출** 중)<br>CNCA와 CFDA의 등록절차가 중복되어 애로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| 인도 | WEEE 가전제품 재활용 규제 | WTO TBT 통보 없이 규정이 개정되어 준비시간이 부족하므로 **시행 연기 및 목표 회수율 완화 요청**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| | 타이어 안전기준 | 인도 외 수출타이어에 대한 **인증 수수료 요구** 및 해외기업에 대한 **은행 보증료 요구 철회** 요청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| UAE | RFID형 에너지라벨 규제 | 라벨 원본 및 RFID 도안 디자인 등 **정보 제공 요청**<br><br>**RFID 의무화 도입 철회 요청**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
| 국가 | 규제명 | 요구사항 (기업애로) | 협의결과 |
|---|---|---|---|
| 이집트 | 텔레비전 에너지효율 규제 | 시행일, 시행기준, 에너지 효율 등급 산정 기준, 라벨 도안, 제조자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 등 **규제 내용 명확화 요청**<br>MFM(multi fuction monitor) 및 일반 **모니터**가 **규제 대상에 포함**되는지 **문의**. (즉, Tuner가 있는 모니터만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) | **해당국**의 **규제당국**에서 **검토 후 회신** |
| 베트남 | QCVN 타이어 규제 | **시행시기 문의 및 규제정보 제공 요청** | 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 |
| 태국 | 전자제품 에너지라벨 제도 | 인증 취득 **시험기간 단축(2주 이내)을 위한** 프로세스 개선 요청<br><br>**에너지효율 등급내의 범위에서 라벨 표기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** 요청<br><br>**전자파일 형태의 라벨 판매 요청** | 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 |
| EU | 전자 디스플레이 Echo Design 규제 | **(에너지효율기준 완화)** 온모드 소비전력, 대기전력 기준을 완화하고 조도센서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한 benefit 적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<br><br>**(규제대상 적용 제외 요청)** 다른 제품에 장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와 85인치 이상의 TV(UHD)의 규제 적용 제외 요청<br><br>**(QLED의 Tier 1 적용 요청)** QLED 제품 특성 상 제조과정과 사용과정에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품이므로 Tier 1 적용 대상에 포함 요청 | 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 |
| 케냐 | 에너지 성능 및 라벨 규제 | **에너지라벨 등록 사이트(웹포털)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**, 라벨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포털 개설 후 최소 **6개월의 시행유예기간 요청**<br><br>라벨도안, **인증취득 예상 소요기간, 일련번호 부여방식 등 정보제공 요청** | 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 |
| 우크라이나 | 에어컨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 | 우크라이나측이 라벨 부착 의무화 시행을 예고한 **'17.1월 이후에도 최종안이 공포되지 않아, 준비에 애로** | 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 |